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위험고지 및 동의수령 사항>

- 본 공모펀드 상장클래스(상장형 수익증권, 이하 동일) 거래 서비스(이하 '본 서비스')는 금융위원회로부터 2024년 11월 13일 및 2025년 4월 16일에 혁신금융서비스로 각 지정받은 「일반 공모펀드의 상장클래스 신설을 통한 상장거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 이에 본 서비스 사업자(혁신금융사업자, 이하 동일)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하 '금융혁신법')」 제20조에 따라, ①본 서비스가 시험운영 중이며 그로 인해 예상하지 못했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및 ②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상장거래 최초 개시일부터 최소 2년~최대 5년6개월) 종료시까지 본 서비스가 법제화되지 않을 경우 본 서비스가 일괄 종료(상장클래스 일괄 상장폐지 후 현금반환)되는 점, ③본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취소되거나 본 서비스 사업자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철회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의 서비스가 종료(해당 상장클래스 상장폐지 후 현금반환)되는 점을 고지합니다.
- 본 서비스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상장클래스를 통해 투자자가 일반 공모펀드를 신속하고 간편하게 직접 거래토록 하는 서비스이므로, 특정 상품(상장클래스)에 대한 최초 거래를 진행하기에 앞서 해당 상품에 대한 투자설명서 내용을 확인하실 것을 권고합니다. (투자설명서는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펀드명을 검색하시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본 서비스 사업자는 금융혁신법 제27조에 따라, ①본 서비스의 제공 및 중단 등으로 인하여 고객님(본 서비스 이용자, 이하 동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점 및 ②본 서비스 관련 규제 적용의 특례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방안이 마련되어 있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 아울러 본 서비스 사업자는 금융혁신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①본 서비스와 관련하여 고객님 및 그 밖의 이해관계자(이하 '이용자등')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사항을 반영하고 이용자들이 본 서비스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점 및 ②분쟁처리 책임자 및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 본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시는 고객님께서서는 아래 ☐에 ☒ 표시 후 상장클래스 거래를 진행하여 주십시오(미동의시 상장클래스 거래가 불가합니다).

본인은 위와 같이 고지 및 안내된 본 서비스 관련 위험 등을 인지하고
상장클래스 거래를 진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